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 - 417호

한국산업인력공단 공고 제2025 - 050호

2025년도 제28회 주택관리사보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

「공동주택관리법」 시행령 제76조, 제95조 제1항에 따라 2025년도 제28회 주택관리사보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3월 28일

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

2025년도 주요 변경사항

○ 모바일 웹 브라우저를 통한 원서접수 가능

기존	변경 후
• PC 웹브라우저로만 원서접수 가능	• PC 및 모바일 웹브라우저로 원서접수 가능(모바일 큐넷 앱으로는 접수 불가)

○ 원서접수기간 내 편의제공 증빙서류 온라인 제출 가능

기존	변경 후
• 방문 또는 우편 접수만 가능	•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큐넷-마이페이지-원서접수내역에서 온라인 제출 가능

1. 선발예정인원 [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5항]

○ 2025년도 제28회 주택관리사보 선발예정인원 : 1,600명

2.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

구분	원서접수	시험장소	시행지역	시험일자	합격자발표
제1차 시 험	**(정기접수) [5일간]** 5. 19.(월) 09:00~5. 23.(금) 18:00 **(빈자리 접수) [2일간]** **※선착순, 환불불가** 6. 19.(목) 09:00~6. 20.(금) 18:00	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선택	서울, 부산 등 19개 지역	6. 28.(토)	7. 30.(수)
제2차 시 험	**(정기접수) [5일간]** 8. 18.(월) 09:00~8. 22.(금) 18:00 **(빈자리 접수) [2일간]** **※선착순, 환불불가** 9. 11.(목) 09:00~9. 12.(금) 18:00		서울, 부산 등 9개 지역	9. 20.(토)	12. 3.(수)

※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[단, 원서접수 시작일은 09:00부터, 원서접수 마감일은 18:00까지 접수 가능]하며,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

※ 정기접수 마감일 13:00～18:00 및 빈자리접수 기간 중에는 가상계좌 결제가 불가하고 다른 결제수단만 가능

※ 빈자리 접수는 환불(취소)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만 **선착순 접수**되므로 사정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, 이 기간에는 취소 및 환불불가

3.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

가. 시험과목 [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4조 별표 7]

구 분	시 험 과 목
제1차 시 험	1 회계원리 2 공동주택시설개론**(목구조・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,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 포함)** 3 민법**(총칙, 물권, 채권 중 총칙・계약총칙・매매・임대차・도급・위임・부당이득・불법행위)**
제2차 시 험	1 주택관리관계법규: 다음의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**(「주택법」,「공동주택관리법」,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,「공공주택 특별법」, 「건축법」,「소방기본법」,「화재예방, 소방시설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,「승강기 안전관리법」,「전기사업법」,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,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,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,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)** 2 공동주택관리실무 **(시설관리, 환경관리, 공동주택회계관리, 입주자관리, 공동주거관리이론, 대외업무, 사무・인사관리, 안전・방재관리 및 리모델링, 공동주택 하자관리(보수공사를 포함한다) 등)**

-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・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**시험 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**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함
- 회계처리 등과 관련된 시험문제는 **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(K-IFRS)을 적용하여 출제**
- 기활용된 문제, 기출문제 등도 변형·활용되어 출제될 수 있음

나. 시험 시간 및 문항 수

시험구분	교시	시 험 과 목	입실시간	시 험 시 간	문항 수
제1차 시 험	1교시	1 회계원리 2 공동주택시설개론	09:00	09:30 ~ 11:10 (100분)	과목별 40문항 (총 120문항)
	2교시	3 민법	11:30	11:40~12:30 (50분)	
제2차 시 험	1교시	1 주택관리관계법규 2 공동주택관리실무	09:00	09:30 ~ 11:10 (100분)	과목별 40문항 (객관식 24문항, 주관식 16문항 (총 80문항)

4. 시험방법

가. **제1차 시험** : 객관식 5지 택일형

나. **제2차 시험** : 객관식 5지 택일형 및 주관식 단답형

5.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

가. 응시자격 : 없음

○ 단,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응시불가 **[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4조제7항 및 제79조]**

나. 결격사유 **[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4항]**

○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택관리사 등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.

1)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
2)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
3)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4)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
5)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(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)

6. 합격자 결정 [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5조]

○ 제1차 시험

-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을 한 사람

○ 제2차 시험

-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을 한 사람. 다만,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을 한 사람의 수가 법 제67조제5항 전단에 따른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모든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

- 법 제67조제5항 후단에 따라 제2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.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까지만 계산하며, 반올림은 하지 아니함

7. 시험의 일부면제

○ 2024년도 제27회 제1차 시험 합격자(2025년도 제1차 시험에 한함, 별도 서류제출 없음)

- 2024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가 2025년도 제1차 시험 재응시를 원할 경우, 응시 가능하며 불합격하여도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에 근거하여 2025년도 제2차 시험에 응시 가능

※ 다만, 2025년도 제1차 시험의 시행일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함

8. 응시원서 접수

가. 접수기간

❍ 제1차 시험 : ‘25. 5. 19.(월) 09:00 ~ 5. 23.(금) 18:00 [5일간]

- 빈자리 접수 : ’25. 6. 19.(목) 09:00 ~ 6. 20.(금) 18:00 [2일간]

❍ 제2차 시험 : ‘25. 8. 18.(월) 09:00 ~ 8. 22.(금) 18:00 [5일간]

- 빈자리 접수 : ’25. 9. 11.(목) 09:00 ~ 9. 12.(금) 18:00 [2일간]

※ 접수기간 중 24시간 접수가능[단, 원서접수 시작일은 09:00부터, 원서접수 마감일은 18:00까지 접수 가능]

※ 빈자리 접수는 환불(취소)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만 선착순 접수되므로 사정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, 이 기간에는 취소 및 환불 불가

나. 접수방법

❍ 큐넷 주택관리사보 홈페이지(https://www.Q-Net.or.kr/site/housing)를 통한 온라인 원서접수

[일반응시자 접수 유의사항]

- 큐넷 주택관리사보 홈페이지(https://www.Q-Net.or.kr/site/housing)에서 인터넷 접수
- 인터넷 원서 접수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을 파일(JPG, JPEG 파일, 사이즈 : 300×400 이상, 300DPI 권장, 200KB 이하)로 첨부하여 인터넷 회원가입 후 원서접수(단, 기존 Q-Net 회원일 경우는 바로 원서접수 가능)

※ 원서접수 시 반드시 본인의 사진을 등재하여야 하며, 타인의 사진을 잘못 등재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 될 수 있음

※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수험자를 위한 접수도우미 운영(전국 공단지부, 지사)

※ 접수 시 등록한 사진은 합격증서 발급용으로 사용 가능하므로, 반드시 규격 증명사진으로 등록

※ 가상계좌는 접수완료 시점이 13시 이전은 당일 14시까지 입금완료, 13시 이후는 익일 14시까지 입금완료 해야 함(지정시간까지 미입금 시 원서접수가 취소됨)

※ 접수마감일은 13시부터 18시까지 가상계좌 결제 불가

❍ 원서접수 마감시각까지 수수료를 결제하여야 접수가 완료되며, 수험표 출력이 가능함

❍ 원서접수기간 내에는 접수 취소 후 재접수 가능

❍ 원서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재접수 및 변경 불가

다. 시행기관

기 관 명	구분		주 소		전 화 번 호		비고
	1차	2차			지번	담당부서	
서울지부	○	○	02512	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	02	2137-0555	1차
					02	2137-0559	2차
강원지사	○	○	24408	강원 춘천시 동내면 원창고개길 135	033	248-8511	
부산지부	○	○	46519	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	051	330-1814	
울산지사	○		44538	울산 중구 종가로 347	052	220-3213	
경남지사	○		51519	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239	055	212-7261	
대구지부	○	○	42704	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	053	580-2372	1차
					053	580-2382	2차
경북지사	○		36616	경북 안동시 서후면 학가산온천길 42	054	840-3034	
경북동부지사	○		37580	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40번길 9	054	230-3258	
경인지부	○	○	16626	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-68	031	249-1224	1차
					031	249-1260	2차
인천지사	○	○	21634	인천 남동구 남동ㅇ서로 209	032	820-8684	
경기북부지사	○		11801	경기 의정부시 바대논길 21	031	850-9122	
경기동부지사	○		13313	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17	031	750-6223	
광주지부	○	○	61008	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	062	970-1767	
전북지사	○		54852	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9	063	210-9226	
전남지사	○		57948	전남 순천시 순광로 35-2	061	720-8532	
대전지부	○	○	35000	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 1	042	580-9137	
					042	580-9133	
충북지사	○		28456	충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394번길 81	043	279-9041	
충남지사	○		31081	충남 천안시 서북구 상고 1길 27	041	620-7690	
제주지사	○	○	63220	제주 제주시 복지로 19	064	729-0714	

라. 수수료 납부

○ 응시 수수료 : 1차 21,000원, 2차 14,000원

○ 납부방법 : 전자결제(신용카드, 계좌이체, 가상계좌, 퀵계좌이체, 간편결제) 중 택1 이용

마. 응시수수료 환불 [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]

구 분	환불 기준
100% 환불	ㆍ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(과오납 금액분만 환불) ㆍ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ㆍ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
60% 환불	ㆍ **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**
50% 환불	ㆍ **시험시행일 1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**
환불 불가	ㆍ 정해진 환불기간 종료 후 환불신청을 한 경우 ㆍ 시험 결시자 ㆍ **응시자격 부적격으로 합격예정이 취소된 경우**

*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1. 사전에 공고된 시험장소가 **시행기관의 사정으로** 변경되어 수험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
2. **정전 등 시험장 설비의 고장 등**으로 인하여 당해 시험장에서 수험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

※ 수험원서 접수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은 큐넷 주택관리사보 홈페이지 (www.Q-Net.or.kr/site/hosing) "마이페이지" 에서만 가능(단, 빈자리(추가)접수 기간에는 접수 취소 및 환불 불가)

※ 이외에 환불 가능한 경우

- 수험자 본인 및 배우자의 사망 또는 수험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가족(부모·(외)조부모·형제·자매·자녀)이 시험일로부터 7일 전까지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**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**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100%
-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(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)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**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**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100% (의료기관의 입원확인서 첨부)
- **국가가 인정하는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*** 발생 시 국가(공공기관 포함)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감염확정 판정을 받거나, 격리대상자로 판정(격리기간에 시험일 포함)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**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** 응시수수료의 100%

*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」에서 지정한 제1급감염병 및 제2급감염병

- 북한의 포격도발 등 심각한 국가 위기단계로 휴가, 외출 등이 금지되어(금지기간에 시험일이 포함)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군인 및 군무원 수험자가 **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** 응시수수료의 100% (중대장 이상이 발급한 확인서 첨부)
- 예견할 수 없는 기후상황으로 본인의 거주지에서 시험장까지의 대중교통 수단이 두절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**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** 응시수수료의 100% (재난문자, 경찰서 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첨부)

☞ 시험 시행일 이후 환불을 신청할 경우 큐넷 메인 마이페이지-원서접수관리-사후환불신청에서 신청

바. 수험표 교부

○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출력 가능

○ 수험표는 시험 당일까지 수험자가 인터넷으로 재출력 가능

※ 「SMART Q-Finder」 도입으로 시험전일 18:00부터 시험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

사. 원서접수 완료 후(결제완료 후) 접수내용 변경 방법

○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취소 후 재접수가 가능하나,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에는 재접수 및 접수내용 변경 불가

※ 빈자리(추가) 접수 기간에는 취소 및 환불 불가

○ 장애인 등은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 표기 및 희망하는 편의요구사항을 선택하고 해당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**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**에 시험장 관할 시행기관으로 제출해야만 시험응시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음

- **(온라인 제출 시)** 원서접수 기간 내 [큐넷 마이페이지-원서접수내역-응시시험 편의제공사항 수정 및 확인]에서 편의제공 증빙서류 제출

- **(방문 또는 우편 제출 시)**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(원서접수 기간 포함)에 편의제공 증빙서류를 응시 시험장 관할 시행기관에 제출

○ 척추장애는 기본적으로 하지장애로 구분하며,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상지장애 진단서**(장애정도 표기 필요,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)** 제출 시, 상지장애로 구분

○ 일시적 신체장애 수험자 중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종합병원(의료법 제3조의3) 의사진단서 제출**(진단서 유효기간 명시 필요,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)**

○ 시각, 뇌병변, 상지지체 등 장애인의 경우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유형 및 편의요청 사항을 표기하고, 장애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편의 제공

○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(병원급 의료기관)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**(임산부는 의원급·병원급 임신사실확인서 제출 시 인정 가능, 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)**

○ 기타,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응시편의 제공 사항은 **'나. 유형별 편의제공 적용 기준'** 참고

〈의사진단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〉

1. 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
2. 해당 응시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는 이유(불편사항) 등
3.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
4. 진단서 유효기간

– 유효기간이 기입되지 않는 경우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

– 단,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 기재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, 의사진단서에 따름

※ 응시편의 제공에 대한 세부내용은 큐넷 주택관리사보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

아. 유형별 편의제공 적용 기준

< 유형별 편의제공 사항 >

장애유형		편의 구분	필기 및 필답형 실기시험	작업형 실기시험	제출서류
시각 장애	중증 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)	시험시간	- 시험시간 1.7배 연장	- 시험시간 1.5배 연장	①,②,③호 중 하나
		문제인지 방법	- 음성지원컴퓨터 - 문제지대독 - 점자 문제지 - 확대 문제지 - 점자정보단말기 - 독서확대기 지참 허용 ※ 상기 항목 중 택1	- 문제지대독	
		답안작성 방법	- 답안대필 - 확대 답안지 - 점자 답안지 - 점자정보단말기 - 음성지원컴퓨터 활용 ※ 상기 항목 중 택1	해당 없음	
		기타	- 별도시험실 배정	해당 없음	
	경증 (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)	시험시간	- 시험시간 1.5배 연장	- 시험시간 1.3배 연장	①,②,③호 중 하나
		문제인지 방법	- 확대 문제지 - 독서확대기 지참 허용 ※ 상기 항목 중 택1	해당 없음	
		답안작성 방법	- 확대 답안지	해당 없음	
		기타	- 별도시험실 배정	해당 없음	
뇌병변 장애	장애 정도 구분 없음	시험시간	- 시험시간 1.5배 연장	- 시험시간 1.3배 연장	①,②,③호 중 하나
		답안작성 방법	- 답안대필	해당 없음	
		기타	- 별도시험실 배정 (좌석 간격 조정)	해당 없음	
지체 장애	(1) 상지 중증 (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)	시험시간	- 시험시간 1.5배 연장	- 시험시간 1.3배 연장	①,②,③호 중 하나
		답안작성 방법	- 답안대필	해당 없음	
		기타	- 별도 시험실 배정	해당 없음	
	(2) 상지 경증 (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)	시험시간	- 시험시간 1.2배 연장	- 시험시간 1.2배 연장	①,②,③호 중 하나
		답안작성 방법	- 답안대필	해당 없음	
		기타	- 별도 시험실 배정	해당 없음	
	(3) 하지 (장애정도 구분 없음, 척추장애* 포함)	시험시간	- 일반 수험자와 동일	- 시험시간 1.1배 연장 ※ 단, 시험 중 이동이 있거나 서서 작업하는 종목에 한정	①,②,③호 중 하나
		기타	- 별도 시험실 배정 (좌석 간격 조정)	해당 없음	

	⑷ 복합장애 [상지+하지]	시험시간	- 상지 지체장애와 동일	- ⑴ 또는 ⑵의 장애정도에 부여한 시간 + ⑶의 장애 시 추가 부여한 시간 연장	①,②,③호 중 하나
		답안 작성방법 및 기타	- 상지 지체장애와 동일	해당 없음	
청각 장애	장애 정도 구분 없음	기타	- 보청기 사용 - 수화통역사 또는 문자통역사 배치 -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- 별도 시험실 배정		①,②,③호 중 하나
신장,심장 장루요루 장애	장애정도 구분 없음	기타	-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(횟수 및 시간) 없음		①,②,③호 중 하나
시험 응시에 지장이 있다고 의료 기관장이 인정한자	일시적 신체장애	편의제공 사항 전반	-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검증하여 결정		④호
	과민성대장증후군, 과민성방광증후군	기타	-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(횟수 및 시간) 없음		
	임신부	기타	-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(횟수 및 시간) 없음		④,⑤호 중 하나

※ 시험시간을 제외한 편의 제공사항은 수험자의 요청 및 시험시행 환경 등에 따라 시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

※ 척추장애는 기본적으로 하지장애로 구분하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상지장애 진단서(장애정도 표기 필요, 소견서 불인정) 제출 시 상지장애로 구분

※ 제출서류

①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은 시장·도지사·군수·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등록증(명서)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. 다만,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1부.

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및 상이등급과 상이부위 확인이 가능한 서류(상이판정 신체검사 결과통지서 등) 각 1부.

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의한 장해급여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관계기관이 발행한 보험급여지급확인원 원본 1부.

④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원본 1부.

- 일시적 신체장애로 인한 편의제공 요청사항 중 시험시간 연장이 포함될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(소견서 불인정, 유효기간 필요) 원본 1부.

• 의사진단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
1. 장애 유형 및 정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(시각장애: 시력 또는 시야각 명기)
2. 장애로 인한 시험응시 시 불편 사항
3. 제공 받고자 하는 편의 제공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

※ 장애인 등 유형별 편의제공 사항을 참조하여 제공 받고자 하는 해당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재

⑤ 임신부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또는 임신사실확인서 원본 1부.

※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 및 정도에 해당하는지 확인

※ 복합장애인 중 손부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시간 산정 방법(예시)

• 시험시간이 60분인 경우(지체장애 중증상지장애① + 하지장애③ 작업형 시험 적용 시)
⇒ ①의 장애 정도에 부여한 시간[표준시간(60분) + {(60분)*0.3)=78분]
+ ③의 장애 시 추가 부여한 시간[(60분*0.1)=6분] = 84분

9.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

가. 공개 및 의견제시 기간

○ 제1차 시험 : ’25. 6. 28.(토) 17:00 ~ 7. 4.(금) 18:00 [7일간]

○ 제2차 시험 : ’25. 9. 20.(토) 14:00 ~ 9. 26.(금) 18:00 [7일간]

나. 공개 및 신청방법 : 큐넷 주택관리사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및 접수

※ 가답안 의견제시에 관한 개별 회신은 하지 않으며,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하는 최종 정답 발표로 갈음

10. 합격자 발표 및 합격증서 발급

가. 합격자 발표

○ 제1차 시험 : 2025. 7. 30.(수) 09:00

○ 제2차 시험 : 2025. 12. 3.(수) 09:00

○ 발표방법

- 인터넷 : 큐넷 주택관리사보 홈페이지(http://www.Q-Net.or.kr/site/housing) (60일간)
- ARS : 1666-0100 (4일간,유료)

나. 합격증서 교부

○ 합격증서 교부는 큐넷 응시원서 접수 시 입력한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·도지사가 교부(교부일정 등은 추후 공지)

11. 수험자 유의사항

【 제1·2차 시험 공통 수험자 유의사항 】

1.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·위조·기재오기·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.

   ※ Q-Net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

   ※ 알림서비스 수신동의 시에 시험실 사전 안내 및 합격축하 메시지 발송

2.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 (단,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), 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, 수험표,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.

   ※ 매 교시 시험시작 이후 입실불가

   ※ 신분증 인정 범위

   • (모바일신분증) ① 모바일 주민등록증* 및 정부24·PASS앱, KB스타뱅킹 국민지갑 등을 통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* 단계별 운영에 따라 현재 14개 지자체 발급 중, '25.3.28.부터 전국 전면 발급 예정 ② 모바일 운전면허증(삼성월렛 등 민간앱에 발급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포함) 및 PASS앱을 통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③ 모바일 공무원증 ④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(모바일 큐넷 전자지갑 및 모바일 신분증앱에 발급된 것) 및 정부24, 카카오, 네이버를 통한 모바일 국가기술자격 확인 서비스 ⑤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(삼성월렛 등 민간앱에 발급된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포함)

   • (실물신분증) ① 주민등록증(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(유효기간 이내인 것)), ② 운전면허증(경찰청에서 발행된 것), ③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, ④ 여권, ⑤ 공무원증(장교·부사관·군무원신분증 포함), ⑥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(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것), ⑦ (구)국가유공자증 및 국가보훈등록증, ⑧ 국가기술자격증 *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0개 기관에서 발행된 것, ⑨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(해양경찰청에서 발행된 것)

   - (초·중·고등학생 및 만18세 이하인 자) ① 초·중·고등학교 학생증(사진·생년월일·성명·학교장 직인이 표기·날인된 것), ② NEIS 및 정부24를 통해 발급(흑백,컬러)된 재학증명서(사진·생년월일·성명·학교장 직인이 표기·날인되고,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) * 스마트폰을 활용할 경우 정부24앱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된 재학증명서만 인정, ③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(별지1호 서식에 따라 학교장 확인·직인이 날인되고, 유효기간 이내인 것), ④ 청소년증(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(유효기간 이내인 것) 포함), ⑤ 국가자격증(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)
   - (미취학 아동) ①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"국가자격검정용 임시신분증", ② 국가자격증(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)
   - (사병(군인)) ①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
   - (외국인) ① 외국인등록증, ②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, ③ 영주증

   ※ 신분증(증명서)에는 사진, 성명, 주민번호(생년월일), 발급기관이 반드시 포함(없는 경우 불인정)

   ※ 원본이 아닌 화면 캡쳐본, 녹화·촬영본, 복사본 등은 신분증으로 불인정

   ※ 신분증미지참자는 응시 불가

3.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

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.

4.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시험시간 중에는 중도퇴실 할 수 없습니다.

※ '시험포기각서' 제출 후 퇴실한 수험자는 재입실·응시 불가 및 당해시험 무효(0점)처리

※ 단, 설사/배탈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중도퇴실 시 해당교시 재 입실이 불가하고, 시험시간 종료 전까지 시험본부에 대기

5. 결시 또는 기권, 답안카드(답안지) 제출 불응한 수험자는 해당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
6.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즉시 답안작성을 멈춰야 하며, 종료시간 이후 계속 답안을 작성하거나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(답안지)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(답안지)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**무효처리(0점)**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7. 수험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, 부정한 행위를 한 수험자에게는 **당해 시험을 정지 및 무효(0점)**로 하고, 해당 시험시행일로부터 **5년 간**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**(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9조)**

※ 부정행위 유형은 국가자격시험 주택관리사보 홈페이지(www.Q-Net.or.kr/site/housing) 참조

8. 시험실에는 벽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, 개인용 시계(손목시계, 탁상시계 등)를 준비하시어 시험시간을 관리하시기 바라며, 휴대전화기 등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전자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※ 시험시간은 타종 등에 의하여 관리되며,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계 및 감독위원의 시간 안내는 단순참고사항이며 시간 관리의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

※ 통신, 계산 또는 검색이 가능한 시계(스마트워치, 스마트밴드 등)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 사용을 금함

※ 시험시간 중 개인용 시계의 알람 등이 울려 시험 진행을 방해한 경우 응시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
9. 전자계산기는 필요시 1개만 사용할 수 있고 공학용 및 재무용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**수험자 본인이** 반드시 메모리(SD카드 포함)를 제거, 삭제(리셋, 초기화)하고 시험위원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 할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. 메모리(SD카드포함)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불가하며 사용 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.

※ 단, 메모리(SD카드포함)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

※ 시험일 이전에 리셋 점검하여 계산기 작동여부 등 사전확인 및 재설정(초기화 이후 세팅) 방법숙지

10. 시험시간 중에는 **통신기기 및 전자기기**[휴대용 전화기, 휴대용 개인정보 단말기(PDA),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(PMP), 휴대용 컴퓨터, 휴대용 카세트, 디지털 카메라, 음성파일 변환기(MP3), 휴대용 게임기, 전자사전, 카메라펜,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, 스마트워치 등]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, **금속(전파)탐지기** 수색을 통해 시험도중 관련 **장비를 소지·착용**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**당해시험을 정지(퇴실) 및 무효(0점) 처리**하며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.

※ **전자·통신기기**(전자계산기 등 소지를 허용한 물품 제외)의 **시험장 반입 원칙적 금지**

※ **휴대폰은 전원OFF하여 시험위원 지시에 따라 보관**

11.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없거나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,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

12. 시험장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금지하며,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.

13. 가답안 발표 후 의견제시 사항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14. 기타 시험일정,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자격 큐넷 홈페이지의 시행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,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의 귀책입니다.

【 제1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】

1. 답안카드에 기재된 **'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(답안지) 작성 시 유의사항'**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.

2. 수험자교육시간에 감독위원 안내 또는 방송(유의사항)에 따라 답안카드에 수험번호를 기재 마킹하고, 배부된 시험지의 인쇄상태 확인 후 답안카드에 형별은 A형으로 마킹 되어있습니다.

3. 답안카드는 국가전문자격 공통 표준형으로 문제번호가 1번부터 125번까지 인쇄되어 있습니다. 답안 마킹 시에는 반드시 시험문제지의 문제번호와 **동일한 번호에 마킹**하여야 합니다.

4. 답안카드 기재·마킹 시에는 **반드시 검정색 사인펜을 사용**하여야 합니다.

※ **지워지는 펜 사용 불가**

5.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

(검은색 사인펜 미사용) 수험자의 부주의(답안카드 기재·마킹착오, 불완전한 마킹·수정, 예비마킹 등)로 판독불능, 중복판독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**수험자 책임**으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.

※ 답안을 잘못 작성했을 경우, 답안카드 교체 및 수정테이프 사용가능(단, 답안 이외 수험번호 등 인적사항은 수정불가)하며 재작성에 따른 시험시간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음

※ 수정테이프 이외 수정액 및 스티커 등은 사용불가

【 제2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】

1~5) 객관식 답안 작성 관련 내용은 제1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과 동일

6)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관식 답안지 수험자 유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.

7) 수험자 인적사항·답안지 등 작성은 반드시 검은색 필기구만 사용하여야 합니다.(그 외 연필류, 유색필기구, 두가지색 혼합사용 등으로 작성한 답항은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)

※ 필기구는 본인 지참으로 별도 지급하지 않음

※ 지워지는 펜 사용 불가

8) 답안지의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 특정인임을 암시하거나 답안과 관련 없는 특수한 표시를 하는 경우, 답안지 전체를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합니다.

9) 답안 정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부분을 두 줄(=)로 긋고 다시 기재 또는 수정테이프 사용이 가능하며, 수정액을 사용했을 경우 채점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

10) 제2차 시험 채점은 전 과목 응시자에 한하여 실시하며, 한 과목이라도 미응시하면 전 과목 0점 처리됩니다.

※ 제2차 시험의 점수는 총득점 및 과목별, 주관식 문항별 득점까지 공개되며, 채점관련자료(채점기준 세부내역 등)은 일절 공개되지 않습니다.

★ **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엄정.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수험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, 기타 시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큐넷 홈페이지 참조 또는 HRD고객센터(☎1644-8000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**